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19가단504701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0나4364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19가단5047014 판결

전문

원 고 A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심유진, 이현석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온

담당변호사 강성필

변론종결 2020. 5. 26.

판결선고 2020. 6.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655,0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4. 관할 행정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광주시 C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수행하는 비법인사단이고, 피고는 2015. 6. 4.부터 2018. 11. 27.까지 원고의 조합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4. 18.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급여 없이 무보수로 조합장직을 수행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2015. 6. 4. 조합 설립 당시에도 ‘2015. 6. 4.부터 조합장직을 무보수로 근무합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조합장 무보수 근무 관련 의 건)을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3.부터 2018. 9. 28.까지 원고로부터 매월 300여만 원과 간헐적으로 수십만 원을 지급받는 등으로 총 149,655,080원(이하 ‘이 사건 지출자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권원 없이 급여(보수)를 수령하여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실제로는 업무추진비에 해당하고 급여가 아니어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다룬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원고의 자금지출서류에 ‘*월 급여’, ‘상여금’, ‘보너스’, ‘휴가비’, ‘추석비’, ‘설상여금’ 등으로 이 사건 지출자금의 비목(費目)이 적혀 있고,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매월 또는 명절 등 일정한 시기에 일정액의 자금이 지출되는 형태를 보이는 점, 피고의 조합장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로 법인카드 등으로 지출된 점, 조합 직원의 지위를 겸한 부조합장을 제외하고는 조합 임원에게 피고와 같은 형태로 조합 자금이 지급된 사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출자금은 피고의 무보수 확약에 반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에게 지급된 급여(보수)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149,655,0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의 다음날인 2019.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

[별지]

지출내역표

입금일	성명	금액	내역	비고
20150703		3,000,000		인터넷출금이체
20150801		3,000,500		인터넷출금이체
20150901		3,000,500		인터넷출금이체
2015.09.12 12:11:18		100,500		인터넷출금이체
2015.09.30 14:00:26		3,000,500		인터넷출금이체
2015.10.31 16:50:29		3,000,500		인터넷출금이체
2015.11.30 12:55:36		3,000,500		인터넷출금이체
2015.12.31 10:27:24		3,000,500		인터넷출금이체
2016.01.29 15:22:08		3,000,500		인터넷출금이체
2016.02.05 09:44:36		300,500		인터넷출금이체
2016.02.29 10:47:53		3,000,500		인터넷출금이체
2016.03.31 13:53:54		3,000,500		인터넷출금이체
2016.04.29 13:20:03		3,000,500		인터넷출금이체
2016.05.31 10:34:37		3,000,500		인터넷출금이체
2016.06.30 15:04:21		3,000,500		인터넷출금이체
2016.07.29 13:45:22		3,000,500		인터넷출금이체
2016.08.07 14:20:33		500,500	휴가비	스마트출금
2016.08.31 18:23:12		3,000,500		인터넷출금이체
2017.01.04 16:53:12		3,873,100		인터넷출금이체
2017.01.20 10:54:53		3,873,100	11월	인터넷출금이체
2017.01.20 10:54:54		3,000,500	10월	인터넷출금이체
2017.01.20 10:54:54		3,000,500	9월	인터넷출금이체
2017.01.26 09:46:52		3,873,100		인터넷출금이체
2017.03.06 10:22:27		4,429,480		인터넷출금이체
2017.04.28 09:40:27		3,873,100		인터넷출금이체
2017.06.30 13:29:10		3,873,100		인터넷출금이체
2017.07.21 11:02:59		500,500	휴가비	인터넷출금이체
2017.07.31 15:27:51		3,873,100	7월급료	인터넷출금이체
2017.08.31 09:32:54		3,873,100		인터넷출금이체
2017.09.29 09:35:36		3,873,100		인터넷출금이체
2017.09.29 17:09:38		500,500	추석비	인터넷출금이체
2017.10.20 17:07:49		3,873,100	10월급료	인터넷출금이체
2017.11.30 17:14:33		3,873,100	11월급료	인터넷출금이체
2017.12.08 13:54:42		8,827,320	18년상여지급	인터넷출금이체
2017.12.29 09:12:49		3,873,100	12월급료	인터넷출금이체
2018.01.31 12:50:18		3,869,050	12월급료	인터넷출금이체
2018.02.09 15:56:50		500,500	연상여금	인터넷출금이체
2018.02.28 14:33:46		3,257,700	2월급료	인터넷출금이체
2018.03.30 09:34:02		3,869,050	3월급료	인터넷출금이체
2018.05.10 15:53:42		6,267,950	4월급료,보너스	인터넷출금이체
2018.05.30 16:30:52		3,869,050	5월급료	인터넷출금이체
2018.06.29 15:49:35		6,363,080	6월급료상여	인터넷출금이체
2018.06.29 15:49:36		498,140	3월상여매지급	인터넷출금이체
2018.08.03 18:47:46		500,500	휴가비	인터넷출금이체
2018.08.13 08:50:24		3,843,590	7월급료	인터넷출금이체
2018.09.07 15:21:52		3,839,710	8월급료	인터넷출금이체
2018.09.21 11:02:01		500,500	추석비용	인터넷출금이체
2018.09.28 13:23:32		3,904,880	9월급료	인터넷출금이체
	계	149,655,080		